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79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94831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0나2359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7904 판결

전문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신석중

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배기명

변론종결 2020. 9. 10.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5,808,000원 및 그중 14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3.부터, 14,2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24.부터, 69,058,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부터, 7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7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부터, 8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원고의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회생채권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계약 관계

1) 원고는 차량 부품 제조 ·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B은 2016. 9. 6. B은 원고의 주문에 따라 자동차 부품 등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B에게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B에게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에 필요한 금형 및 검사구 세트(이하 '이 사건 금형 등'이라 한다)를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8. 9.경 B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다.

4) 원고와 B은 2019. 1. 31. 이 사건 계약의 종료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제1조 합의 목적

갑(원고)과 을(B)은 ITEM 강제 회수로 인한 거래 종료에 따라 현재 을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갑에게 공급하고 있는 관련 부품 생산 및 금형을 단산 이전에 조기 강제 회수, 갑에게 이관함에 있어서 을의 투자금 및 손실비용에 대하여 갑이 보상하고, 이 사건 금형 등의 이관 업무와 갑의 조립 양산 LINE에 원활하고 안정된 부품을 공급하기 위함

제2조 합의 내용

- 1) 합의 금액: 일금 이십이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 2) 포괄 합의에 의한 금액으로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금형, 검사구 및 PALLET(CK, YB전용에 한함) 이관품목

첨부 2 일자별 이관품목 및 방법

제9조(특약)

- 1) 갑은 본건 합의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본 합의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을과 을의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나 이의(각종 가처분, 반환청구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다. 위반시 제2조 제1항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배상한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거나 접수 후 취하하여도 이의제기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 고발장 접수 시 또는 이를 취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한다.
- 2) 갑과 을은 본 합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각서를 작성한다.

(첨부 3) 각서

원고는

- 1) 합의서 서명 이후 B 및 임직원을 피고로 하는 소송 등(각종 가처분 포함)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제소원칙)

5)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는 B에게 합계 2,4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하였다.

나. B에 대한 회생절차 등

- 1)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6. 26.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법원은 피고 소송수계인을 B의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손해배상채권 2,645,808,0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소송수계인은 이를 전부 부인하였다.

3) 원고는 위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해진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 9. 19.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원고와 B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B과 그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B은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각서에는 '부제소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2,4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B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합의는 B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소송수계인인 C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D 등을 협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

2)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거나 계약을 해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D 등에게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D이 공포를 느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법질서에 위배될 정도의 강박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철민 판사 손광진 판사 조민혁